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941호(號) 1933(昭和 8)년 6월 30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91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8호(號)(조선총독부철도[朝鮮總督府鐵道], 사설철도(私設鐵道), 궤도(軌道) 및 항로(航路) 간(間)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旅客及手小荷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1933(昭和 8)년 7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6월 30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8조(條) 중(中) 말미(末尾)에 아래[左]의 1호(號)를 추가(追加)함.

5 옹기(雄基)·청진(淸津)·쓰루가(敦賀) 간(間)의 항로(航路)에 의(依)한 것에 있어서는 국(局)이 정한 바[所定]에 의(依)해 산출(算出)한 일수(日數)에 6일(日)을 추가(追加)함.

제13조(條) 중(中) 말미(末尾)에 아래[左]의 1호(號)를 추가(追加)함.

5 옹기(雄基)·청진(淸津)·쓰루가(敦賀) 간(間)의 항로(航路) 2·3등(等) 2할(割)

제14조(條) 중(中) 「여수(麗水)·시모노세키(下關) 항로(航路)에 있어서」의 아래[左]에 「여객 규칙(旅客規則) 제59조(條)에서 제62조(條)까지 및 제69조(條)의 규정(規定)에 의(依)한 특종할인(特種割引)에 대해서는 옹기(雄基)·청진(淸津)·쓰루가(敦賀) 간(間) 항로(航路)에 있어서」를 추가(追加)함.

제20조(條) 중(中) 「여수(麗水)·시모노세키(下關) 간(間)」을 「여수·시모노세키(下關) 및 옹기(雄基)·청진(淸津)·쓰루가(敦賀) 간(間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22조(條) 중(中) 「여수(麗水)·시모노세키(下關) 간(間) 항로(航路)」를 「여수(麗水)·시모노세키(下關) 항로(航路) 및 철도(鐵道)와 옹기(雄基)·청진(淸津)·쓰루가(敦賀) 간(間) 항로」로, 「여수(麗水)·시모노세키(下關)」를 「여수(麗水)·시모노세키(下關) 간(間) 및 옹기(雄基)·청진(淸津)·쓰루가(敦賀) 간(間)」으로 개정(改正)함.